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3322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26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,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,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,

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,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출국납부금

제2조제3항 중 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”을 “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”를 “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(이하 “출국납부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받은 사람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납부금”을 “출국납부금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등) ①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예정대로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출국납부금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(이하 “환급청구권”이라 한다)은 출국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,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은 기금에 귀속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및 환급청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납부금 부과·징수 업무의 위탁)”을 “(출국납부금 부과 등 업무의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”를 “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부과·징수, 제11조의2제1항·제2항·제4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,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”을 “출국납부금의 부과·징수,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,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정대로 출국하지 아

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 (생 략)	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(財源)으로 조성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의2.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</u>
	<u>기금에 귀속되는 출국납부금</u>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<u>자로서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자</u> 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 금에 납부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사람은</u> ----- ----- -----.
④ <u>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</u> <u>받은 자가</u> 부과된 납부금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 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	④ <u>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(이</u> <u>하 “출국납부금”이라 한다)을</u> <u>부과받은 사람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3항에 따른 <u>납부금</u> 의 부과 · 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⑥ ----- <u>출국납부금</u> ----- ----- -----.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11조의2(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등) ①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예정대로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출국납부금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(이하 “환급청구권”이라 한다)은 출국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,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은 기금에 귀속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및 환급청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

제12조(납부금 부과·징수 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 제12조(출국납부금 부과 등 업무의 위탁) ① -----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부과·징수, 제11조의2제1항·제2항·제4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,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----. ② ----- ----- 출국납부금의 부과·징수,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,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----.
---	---